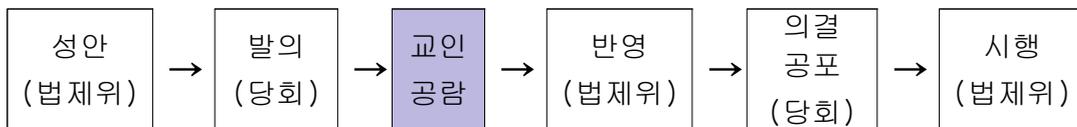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 . . (제 회)	

『부활동산 이용에 관한 규칙』 제정안

대표 발의자 (공동)	당회원 경조위원장 유제남  당회원 법제위원장 박인초	(서명)  (서명)
발의일	2016. 5. 29.	



# 당회 의결서

## 1. 의안

- 『부활동산이용에 관한 규칙』 제정

## 2. 발의자 : 경조위원장 유제남 법제위원장 박인초

## 3. 경과

- 5.1 소위 1차 모임, 입법계획 검토
- 5.8 소위 2차 모임, 제정안 초안 검토
- 5.29 당회 발의
- 6.12~6.19 교인공람, 의견 반영
- 6.26 정기당회 의결, 공포시행(7일후)

## 4. 심의 · 의결내용

서부제일교회 교회조직 · 운영기본규정 제17조7의  
규정에 따라 同 의안을 심의 · 가결함.

## 5. 관련조치

동 규칙을 2016. . . 공포 · 시행함.

2016. .

당회장 :

(서명)

## 1. 의결주문

「부활동산이용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그동안 부활동산이 규칙이 없이 운영되어 온 바, 일정한 기준을 수립하여 명확한 지침 하에 운영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제정안 전문 참조>

# 부활동산 이용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서부제일교회가 운영하는 부활동산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자의 범위)

1. 부활동산은 본 교회 등록교인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1항의 직계존속에는 5대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 직계비속에는 5대손(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까지 포함된다.
3. 전 2개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회는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이용방법)

1. 부활동산에 유골을 안치할 때는 반드시 화장 후 분골한 유골을 산골하여야 한다.
2. 이장(매장한 유골, 납골당에 안치한 유골 등)도 이와 같다.

제4조(안장 장례예식) 부활동산 안장시 장례예식은 부활동산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다.

1. 부활동산 안장 장례예식은 유족이 원하는 경우 교구목사가 집례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임목사가 지정하는 교역자가 집례한다(부활동산 안장 전 장례예식은 "경조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2. 이장하는 경우 유골이 부활동산에 도착 전 장례예식은 가족과 친지만 참석하며, 부활동산 도착 후 안장 장례예식은 제1항에 따른다.

제5조(이용신청 등)

1. 부활동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인은 제1호 서식 [부활동산 이용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인 또는 이장 전일까지 경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신청서를 접수한 경조부는 전 3개조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1호 서식 [부활동산 이용신청서]에 허가의 뜻을 적시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부활동산 안치성도 등록)

1. 부활동산에 고인을 안장한 유족은 제2호 서식 [서부제일교회 부활동산 등록성도 대장]을 작성하여 고인의 사진 파일과 함께 교회 사무국에 2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경조부는 유족을 위로하며, 위 카드가 완성 제출되도록 지원한다.

부칙(제정 서부제일교회규칙 제 호)

1. 본 규칙은 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의 서면은 긴급한 경우 구두로 같음하고, 서면은 사후에 보완할 수 있다.

[제1호 서식]

[서부제일교회 부활동산 이용신청서]

유족을 대표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부제일교회 부활동산에 아래 고인의 안장(①첫 장례, ②이장)을 신청합니다.

○ 고인성명(직분) :

○ 소천일시 :

○ 안장일시 :

○ 안장시 교회주관 예식 신청 여부 : 신청, 미신청

년 월 일

신청자(직분) : (서명)

\* 신청자와 고인의 가족관계 : 신청자는 고인의 임.

- 신청자 주소 :

- 신청자 전화 : 자택 \_\_\_\_\_ 휴대폰 \_\_\_\_\_

본인은 부활동산의 현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유족 모두의 뜻을 모아 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안장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자 : (서명)

[부활동산 이용 허가 통보]

위 신청에 대해 부활동산 이용을 허가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부제일교회

결재	경조부장	경조위원장

